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

집합투자기구 명칭 : KTB 중국 1 등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정정 전	정정 후
제 33 조(이익분배)①~②<생략>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	**제 33 조(이익분배)**①~②<현행과 같음>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